

안산시의회장(葬)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91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10. 7.

발의자 : 박선희 의원

외 13 인

□ 제정이유

- 안산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 안산시의회장으로 장의를 집행하여 줌으로서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,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명복을 빌어주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 함 (안 제1조)
-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함(안 제2조)
- 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해 장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함 (안제4조)
- 장의위원회에서는 영결식의 방법, 일시 및 장소, 소요예산,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 · 집행함(안 제4조 제2항)
- 장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에서는 집행위원회를 둠.(안 제5조)
- 의회장의 장의기간, 장의절차,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함(안 제7조)
-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 범위내에서 집행함(안 제8조)

□ 제정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□ 기타 참고자료

- 건전가정의례준칙

안산시 의회장(葬)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안산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.

제3조(대상자 및 심사·결정)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결정한다. 다만,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)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영결식의 방법,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
2.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편성·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

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,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⑤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집행위원회) 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·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.

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,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.

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

④ 집행위원회는 총무, 의식, 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.

⑤ 집행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.

제7조(장의기간 등) 의회장의 장의기간, 장의절차,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「전전 가정의례준칙」을 준용한다.

제8조(장의비용)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와 협의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.

제9조(조기개양)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구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 표】

장제비 기준

사 항 별	규 격	수 량	비 고
신문공고	3단×15cm	1개사	지방일간지
영결식장 설치 텐트설치 의자배치	면적6m×3m=18m ² 높이4m이하 조립식 행사용	1식 4조 이하 500조 이하	5.5평
영구차	중형	1대	1일간
현화용 꽃 근조리본 등 가.영정사진 나. 현화 다.근조리본 라.장갑 마.넥타이 바.영구차 리본 분향소 설치 가.분향소 설치 및 장식비 나.현화	대 특대 대 일반 흑색(흉화) 흑색(소) 백색 흑색 대형 장의위원회 결정 일반	1조 1개 10개 300개 100개 300개 200족 30개 1개 1식 200개	장의위원장용 유족 및 집행위원장용 조문객용 유가족, 장의위원장, 집행위원장, 위원장용, 내외귀빈 조객문용 조문객용 조문객 및 종사원용 종사원용 설치장소에 따라 적의결정 조문객용
조화	대형	1개	의장명의
안내문 인쇄	모조3절 180g/m ²	500부	의회명의
장의행사 협조 가.방송설비		1식	필요시